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686
----------	------

2026년 6월 17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5월 26일, 곽향기 의원
2. 회부일자 : 2026년 5월 27일
3. 상정일자 : 제33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6월 17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곽향기 의원)

1. 제안이유

-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고자, 학교급식 정보공개 범위를 기존의 식단 총 열량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은 필수 영양소별 세부 열량까지 확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것임
- 학교급식 게시판 운영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급식 운영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고 현장 중심의 급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에서 보유·관리하는 급식 정보공개 범위 중 식단표의 총 열량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각 열량까지 확대하여 세부 영양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호)
- 학교 홈페이지 내 ‘학교급식 게시판’ 운영을 의무화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하고, 학교장이 이를 급식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소통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의2)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6년 5월 26일 광항기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3686호로 발의되어 2026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 동 개정조례안은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급식 식단의 주요 영양소의 각 열량 등을 확대하여 공개하고, 학교급식 게시판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급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음.

2. 주요 검토의견

1) 학교급식의 정보공개(안 제10조제5호)에 관한 검토

- 안 제10조제5호는 식단의 총 열량과 주요 영양소의 각 열량을 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영양 균형을 인지하여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임.

-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통해 학교급식 영양 관리 및 식생활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올바른 식사선택 능력 함양을 위해 학교급식 영양표시제를 운영하면서 영양정보가 표시된 주간·월간 식단표를 가정에 제공하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¹⁾
- 또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각 학교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급식의 열량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사항은 매년 실시되는 학교급식 운영평가에도 반영되고 있음.

[표-1] 학교급식 영양량 공개 관련 운영평가 내용

평가 항목 및 내용	출처
○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영양량 표시제 시행 및 급식메뉴 사진 공개 - 식단에 표시 대상 식재료의 원산지 및 영양량 표시제도 시행, 실제 급식메뉴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있는가?	제5차 개정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교육부)

- 따라서 식단의 총열량뿐만 아니라 주요 영양소별 열량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식단의 영양 구성과 열량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안 제10조제5호의 입법 취지와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1) 2026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66페이지)

제5장 영양 관리 및 식생활 지도 강화

3. 추진방향

○ 올바른 식사선택 능력 배양을 위한 학교급식 ‘영양표시제’ 실시 강화

· 학생들에게 영양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자기 식생활 관리능력 함양

☞ 「학교급식 영양성분 알기 교육자료(교구)」활용: 보건안전진흥원 보급(2017. 12.)

· 영양 표시된 주간·월간 식단표는 가정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공개, 주간식단표는 교실 또는 식생활교육관(식당) 입구 등에 게시

있음.

- 이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급식에 대한 영양표시제를 통해 이미 탄수화물·단백질·지방 등 주요 영양소의 함량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이를 열량으로 환산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지고 있어 현행 제도를 통해서도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만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각 열량을 별도로 산출할 경우 영양교사 등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각 열량’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주요 영양소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행정관리담당관-6550, 2026.6.4.)

- 그러나 최근 소아·청소년 비만²⁾ 및 당뇨³⁾ 등 만성질환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식단에 포함된 영양소 구성과 열량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음.

- 특히 소아당뇨 등 특정 질환으로 인해 영양소 섭취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탄수화물 함량뿐만 아니라 실제 열량 정보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건강관리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며, 영양정보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조례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⁴⁾

- 반면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하고 있는 영양정보를 기초로 각 영양소별 열량을 추가로 환산·산출하여 제공하도록 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는 별도의 계산과 검증 절차가 필요하게 되어 행정업무 부담이 증가

2)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 아이의 현재와 미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6.3.3.)

3) 당뇨병·희귀질환 앓는 소아청소년 늘고 있는데...교내 보건인력은 감소(메디컬투데이, 2023.10.6.)

4) 당뇨병환자는 탄수화물을 전체 에너지의 55-65% 정도만 섭취한다면 혈당 개선에 도움(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특히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하고 있는 영양정보는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이스 급식 시스템의 정보를 사용하고 있고, 해당 시스템은 주요 영양소의 영양량만을 제공하고 있는바,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정보를 산출·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정비와 업무 절차 마련도 필요한 만큼 제도 시행에 따른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표-2]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및 영양표시제(홈페이지 공개 예시)

주간 학교급식 영양량				06월 15일(월)	06월 16일(화)	06월 17일(수)	06월 18일(목)	06월 19일(금)
				영양량	영양량	영양량	영양량	영양량
에너지(kcal)	759.35	759.35	12.73	656.20	777.73	1,052.15	977.88	816.08
탄수화물(g)	0.00	0.00	54.02	84.29	108.57	151.13	88.82	135.86
단백질(g)	19.65	19.65	21.35	40.28	45.99	61.39	42.31	34.72
지방(g)	0.00	0.00	24.63	16.55	16.84	19.65	48.86	13.32
비타민A(μg RAE)	172.32	243.51	219.58	215.05	208.87	95.51	269.58	308.89
티아민(mg)	0.33	0.40	0.76	1.09	0.58	0.98	0.46	0.70
리보플라빈(mg)	0.40	0.46	0.67	0.55	0.49	1.07	0.52	0.69
비타민C(mg)	26.54	33.40	15.57	18.91	15.78	8.14	22.03	12.97
칼슘(mg)	236.50	277.31	264.05	277.81	246.18	211.99	312.73	271.54
철분(mg)	3.66	4.65	4.10	3.90	3.84	4.44	3.57	4.77

* 에너지는 권장섭취량의 ±10%, 구성비는 탄수화물(55~65%) : 단백질(7~20%) : 지방(15~30%)

* 1g당 에너지(kcal)는 탄수화물 4, 단백질 4, 지방 9kcal로 환산

* 주 평균 섭취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영양량의 평균입니다.

○ 따라서 안 제10조제5호와 같이 주요 영양소별 열량을 공개하는 것은 학생 건강 증진과 영양정보의 제공 확대라는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과 운영 여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이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업무 부담 완화 방안과 시스템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2) 학교급식 게시판 운영(안 제10조의2)에 관한 검토

- 안 제10조의2는 학교장이 학교급식 정보 제공 및 의견수렴을 위해 학교급식 게시판을 운영하도록 하고, 해당 게시판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장은 이를 급식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홈페이지 내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교급식 게시판 운영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명시⁵⁾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운영평가에서도 학교급식 게시판 운영 및 수요자 의견 수렴 여부를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음.

[표-3] 학교급식 게시판 운영 관련 운영평가 결과(2024년)

평가항목(내용)			평가결과(학교 수)			
			평가대상	우수	보통	미흡
급식운영지도 및 권장사항	수요자 의견 반영	17. 학교 홈페이지의 급식게시판 운영 등 의견을 수렴하여 급식운영에 반영하고 있는가? -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게시판 운영 및 건의함, 학생회 의견수렴 활동여부 등	1,343	1,302	41	0
		18. 학교급식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가? - 설문조사(만족도 등) 계획수립, 설문 실시, 결과 분석 후 조치 및 공개	1,343	1,258	77	8

5) 2026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5페이지)

2. 열린 학교급식 운영

○ 학교 홈페이지에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교급식게시판’ 운영

- 따라서 안 제10조의2는 현행 지침으로 운영 중인 학교급식 게시판 운영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급식 운영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현장 중심의 급식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 본문 중 “열량”을 “총 열량 및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각 열량”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학교급식 게시판 운영) ① 학교장은 학교급식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이하 “급식 게시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급식 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급식 게시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학교급식의 정보공개) 제3조제3항에 따른 학교에서 보유·관리하는 급식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 략)</p> <p>5. 제4호의 식단표에 따라 제공되는 식단의 <u>열량</u>과 식단 사진. 다만, 제4호의 식단표와 다른 식단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식단이 변경된 사유를 포함한다. 이 경우 일부 학생에게 제공되는 대체식단은 예외로 한다.</p> <p>6. ~ 8. (생 략)</p> <p><u><신 설></u></p>	<p>제10조(학교급식의 정보공개)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u>총 열량 및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각 열량</u>---. - ----- -----. ----- -----.</p> <p>6. ~ 8. (현행과 같음)</p> <p><u>제10조의2(학교급식 게시판 운영)</u></p> <p><u>① 학교장은 학교급식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이하 “급식 게시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u></p> <p><u>② 학교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급식 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③ <u>학교장은 급식 게시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